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3일,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호선의원)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①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경우, ②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③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매년 구조되는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 중 약 2만 마리의 동물이 미분양·질병 등의 사유로 인도적 처리가 되고, 그 시행을 한 수의사의 대다수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한 가축방역관에게 심리·정신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라 수의사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재난·사고 상황에서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인용 조항을 수정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시 발생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